

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

- 「형법」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-

1. 개요

- 오늘(6. 5.)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(30년)를 폐지하는 내용의 「형법」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
※ 현행 「형법」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(소위 ‘집행 시효’)

형법 제77조(형의 시효의 효과)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.

제78조(형의 시효의 기간)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.

1. 사형 : 30년

-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(이하 ‘사형확정자’)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,
-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‘15년 공소시효를 폐지 하였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 되어 공소시효 제도와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을 공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.

※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,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

2. 주요 내용

-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.

현 행	개 정 안
제77조(형의 시효의 효과)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.	제77조(형의 시효의 효과) 형(사형은 제외한다)을 선고받은 자----- -----.
제78조(형의 시효의 기간)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. 1. 사형: 30년 2.~7. (생 략)	제78조(형의 시효의 기간) ----- ----- ----- -----.
第80條(時效의 中斷) 時效는 死刑, 懲役, 禁錮와 拘留에 있어서는 受刑者를 逮捕함으로, 罰金, 科料, 沒收와 追徵에 있어서는 強制處分을 開始함으로 因하여 中斷된다.	제80조(형의 시효의 중단) 시효는 징역,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, 벌금, 과료,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.

-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사형의 시효 폐지에 관한 적용례) 제77조, 제78조제1호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.

3. 향후 계획

-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번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,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- 아울러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검찰국 형사법제과	책임자	과장	윤원기 (02-2110-3560)
		담당자	검사	이정아 (02-2110-3564)